

윤리규범 실천지침

2023. 6.

SK실트론 주식회사

제1장 총칙

1.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SK실트론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SK실트론 주식회사 및 국내외 법인 및 지사, 자회사, 투자회사의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실천지침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3. 운영조직

- 1) 회사는 윤리경영 실천과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의 준수를 위한 제반 실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윤리경영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자율책임경영지원담당이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 · 추진
 - 윤리경영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변경 · 운영
 - 윤리경영 관련 규범 · 지침의 제정 · 개정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
 -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교육 활동
 - 윤리경영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 접수 · 조사, 결과 조치
 - 윤리경영 관련 자문 수행 등
-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윤리경영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문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윤리경영 위반 사항의 조치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그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윤리경영 실천 의무

- 1) 구성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항상 숙지하여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여야 한다.
- 2) 구성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 윤리규범과 실천지침 및 실천 Guide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3) 단, 윤리규범과 실천지침 및 실천 Guide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그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 4) 구성원은 자신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타인의 윤리규범 위반 행동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 5) 구성원은 윤리경영 실천의 다짐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 [별표 1]
 -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 - [별표 2]
- 6) 구성원은 이해관계자에게도 윤리규범과 실천지침 및 실천 Guide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시키어 적극적으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 시에는 실천에 대한 합의로서 계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다음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 BP(Business Partner) 윤리실천 서약서 - [별표 3]
- 7) 조직책임자는 소속 구성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2장 구성원의 기본윤리 위반 유형

1. 문서 · 계수 조작 및 허위 보고

- 1) 문서 · 계수의 조작이나 허위 보고 등은 조직 책임자나 관련 부서의 올바른 의사

결정 및 판단을 저해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2) 회사 경영진, 상급자, 사내 감사부서 또는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허위의 내용을 보고하거나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 3) 직접적 허위 보고 외에 보고를 누락·지연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도 동일한 행위에 해당된다.
- 4) 회사 문서관리 기준 및 법규에 의한 보존 연한 경과 이전에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선물 등 수수

- 1) 구성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선물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별표 4]
- 2)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거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선물 등 수수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금전 :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 증권 등 수수
 - 자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무상 수취, 매입/매도, 임차/임대, 담보 설정 등
 - 부채 : 부채(외상 대금, 대출금, 이자 등)의 면제·상환·보증, 금전대차 등
 - 선물 : 물품, 시설·서비스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판촉이나 할인혜택 등 수수
 - 경조금 : 경조금, 경조 물품(화환, 돌 반지 등) 수수
- 4)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공식적인 각종 계약 또는 제휴 업무 추진 시 상호 교환하는 의례적인 선물
 -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용되는 판촉이나 할인 혜택 등으로서 그 시가가 규정된 한도(1회 5만원 및 연간 총액 30만원) 이내인 경우
- 5)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사전 고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해관계자에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거나 상사, 동료, 부하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안내장을 전달하거나 발송(e-mail, 우편, FAX 등)하는 행위
 -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 6) 구성원 상호간 금전대차 등 개인적인 거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상기 내용에 구체적인 경우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 접대 · 편의 등 수수

- 1) 구성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 접대 · 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별표 5]
- 2)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회사가 사전 승인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
 -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직책임자 승인 하에 규정된 한도(1인당 5만원 및 1회당 총액 30만원) 이내의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
- 3)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보장, 퇴직 후 거래 계약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4) 상기 내용에 구체적인 경우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회사 자산 및 비용 등의 부당 사용

- 1) 회사의 모든 유 · 무형자산과 비용 등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부당 사용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고정자산 : 설비 기기 등을 무단 사용, 무단 반출, 사업 목적 외 전용 등
 - 업무용자산 : 차량, PC, 소모품 등을 무단 사용, 무단 반출, 개인 용도 사용 등
 - 무형자산 : 직무 관련 정보/지식, 제품 설계도 등을 자신/타인의 영리에 활용 등
 - 회사공금 : 무단 인출, 사적인 용통, 회계 장부의 조작을 통한 착복 등
 - 법인카드 : 불법 전용(불법 할인대출 등), 비용 계정 전용, 개인 용도 사용 등
 - 비용 : 허위 영수증 처리, 무 증빙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 용도의 비용 처리 등
- 2) 회사의 기밀 및 정보자산(지적재산권, 개인 정보 및 제3자 정보 포함)을 무단 공개와 유출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타인과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승인 절차와 정보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와의 이해상충 행위

- 1) 구성원이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 상충 등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금지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력회사의 범위에는 현재 협력회사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포함한다.

- 해당 보유 주식에는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 및 차명도 포함한다.
- SK멤버사, KOSPI 200, KOSDAQ 50에 포함된 회사는 주식 보유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구성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와 공동 투자하여 동산·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 상충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금지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콘도·골프·헬스 클럽 등의 회원권, 부동산 투자 등 공동의 명의로 된 자산 및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해당되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와 공동 투자하여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는 협력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3) 구성원은 협력회사 주식 보유나 이해관계자와 공동 투자, 공동 재산 획득 등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별표 6]

4) 구성원 본인이나 그 가족은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구성원은 타 회사에서 겸임·겸직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6) 구성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후 개인 사업이 가능하나, 정상 업무 수행이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구성원은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의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조직책임자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직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하여 회사와의 이해 상충 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8) 구성원은 회사와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해 상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직 책임자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직무 태만

1) 구성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3) 구성원은 직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동료 및 관계 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관리 감독 소홀

- 1) 구성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 2) 특히, 관리자의 경우 산하 구성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월권 행위

- 1) 구성원은 지위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또한, 자신의 직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9. 품위 유지 위반

- 1) 구성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대내 · 외적인 품위를 지켜야 하며, 사회 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 2) 구성원은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10.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1) 구성원은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괴롭힘이나 반사회적 언행 등과 같은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구성원은 유언비어의 조성 ·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4) 구성원은 승진 · 이동 등에 따른 화환 · 선물 주고받기, 과도한 내부 의전 등과

같은 회사 내에서의 허례허식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제3장 사업파트너 관련 준수사항

1. 부당한 담합 금지

- 1) 경쟁사와 가격 산정 방식, 확정 가격, 마진율, 입찰 시 낙찰자 및 낙찰 가격 등에 대한 합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경쟁사와 상품/서비스의 종류, 수량,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제한하는 협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3) 경쟁사와 거래지역 할당, 거래처의 고정 · 할당 등의 협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4) 법무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 없이 경쟁사와 사업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경쟁사와의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

2. 협력회사 선정의 공정성

- 1)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기피(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한정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회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나 법적인 이슈 등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특정 업체에 특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유 없이 납품 가격 · 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또는 물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거래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4)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업무 담당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내부 또는 외부 인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거래 절차

- 1)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거래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가격, 거래 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끼워팔기 등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4)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거래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기타 상대방의 인사·투자 등 경영상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5)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 등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6)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 부당하게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7)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 지원이나 거래 단계 추가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과다하게 지원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제보자 보호

1. 제보자 보호 규정

- 1)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았을 경우, 법률에 따라 그 시정 및 보호 조치(신변보호조치, 불이익금지 조치)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자로부터 시정 및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제보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4)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 5) 회사는 제보자 외에 제보 내용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 6) 회사는 제보자가 보복, 불이익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제보자를 보호한다.
- 7) 윤리상담 및 제보 채널은 다음과 같다.
 - 웹사이트 : <https://ethics.sk.co.kr>
 - 이메일 : sksiltron.ethics@sk.com

- 전 화 : 054-470-8456
- 팩 스 : 054-710-5646
- 우 편 :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132-11 SK실트론 자율책임경영지원담당
(☎ 39400)

2. 제재 및 감면

- 1) 회사는 제보자 보호 방침을 위반한 자를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본 조치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제보자에게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인지한 제보자 신원이나 제보 내용의 누설
 -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색출을 지시하는 행위 등
- 2) 윤리규범과 실천지침 및 실천 Guide에 저촉되는 활동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 3) 회사는 비윤리 구성원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Business Partner에 대해 심사를 통해 제보자 자격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감면하거나 보상(거래확대 or 포상금)을 할 수 있다.

부칙

1.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7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23년 6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 외에 구성원들이 일상 업무 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윤리규범 실천 Guide'를 운영한다.
4.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윤리규범 실천 Guide의 위반사항은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 [별표 1]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 [별표 2]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
- [별표 3] BP(Business Partner) 윤리실천 서약서
- [별표 4] 금전 · 선물 등 수수 신고 절차

[별표 5] 항응 · 접대 · 편의 등 수수 신고 절차

[별표 6] 협력회사 지분 참여 신고 절차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본인은 SK실트론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구성원을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회사와 상호 발전하며, 경쟁사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정직하게 제공하고, 주주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회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으며,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구성원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비리 행위를 제안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겠습니다.
4. 윤리규범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 진행 시, 회사가 요청하는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의 모든 협조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5. 본 실천 서약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인식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윤리경영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동하겠습니다.
6. 만약,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에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사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

본인은 SK실트론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등한 참여 기회 속에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념으로 하는 자사의 경영원칙을 추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비롯한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국내 및 국제 상거래 활동 시 부패방지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따른다.
2. 국내외 반부패 법규 및 자사의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지침 등을 숙지하며, 이에 따라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 또는 기타 수수금지 금품 등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3. 반부패 법규 및 자사의 실천지침 등과 관련해, 국내외 협력업체 및 에이전트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청탁 또는 뇌물 공여 등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선량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한다.
4. 반부패 법규 및 자사의 실천지침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본인이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년 월 일

소속 :

사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BP(Business Partner) 윤리실천 서약서

당사/본인은 귀사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 윤리성과 신뢰도의 확보 ·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및 공감하며, 이에 비윤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이행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본인은 (i)귀사와 진행했던 과거의 거래 관계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를 위반하거나 특히 다음과 같은 비윤리 행위(이하 “비윤리 행위”)가 없었음을 진술 및 보장하고(비윤리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고 제재 기간이 종료된 건은 제외), (ii)향후 거래(현재 귀사와 진행 중인 거래 및 장래 귀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 위반이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본인은 (iii)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도 기업 윤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가. 귀사 소속 임직원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에스케이) 내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품, 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제공 행위. 이익 제공과 관련한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
 - 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향응, 접대 행위
 - ②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③ 부채의 탕감 또는 제3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 행위, 비전형적인 동산/부동산 거래*
 - * 정당한 근거 없이 통상적인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비전형적인 동산 및 부동산 거래
 - ④ 금전소비대차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거래
 - ⑤ 기타 체결 형태를 불문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약속 등
 - 나. 당사/본인의 동종 또는 경쟁업체와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 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의로 중요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 라. 기타 귀사 또는 귀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2. 비윤리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하는 관련 자료(비윤리 행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 금융자료 포함)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3. 비윤리 행위 발생(귀사와의 과거 거래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의 사후적 적발을 포함) 시, 귀사가 당사/본인의 비윤리 행위 발생 사실 및 당해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를 귀사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에스케이) 내 모든 계열회사(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본인은 이러한 통지 및 그 결과 발생하는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의 공유가 귀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본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4. 당사/본인은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가 비윤리 행위(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당사의 비윤리 행위도 포함)를 근거로, 당사/본인과의 거래(장래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참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제재조치(계약 갱신 거절, 신규 거래 제한을 의미하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한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귀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비윤리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제재조치를 의미함)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를 상대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어떠한 이익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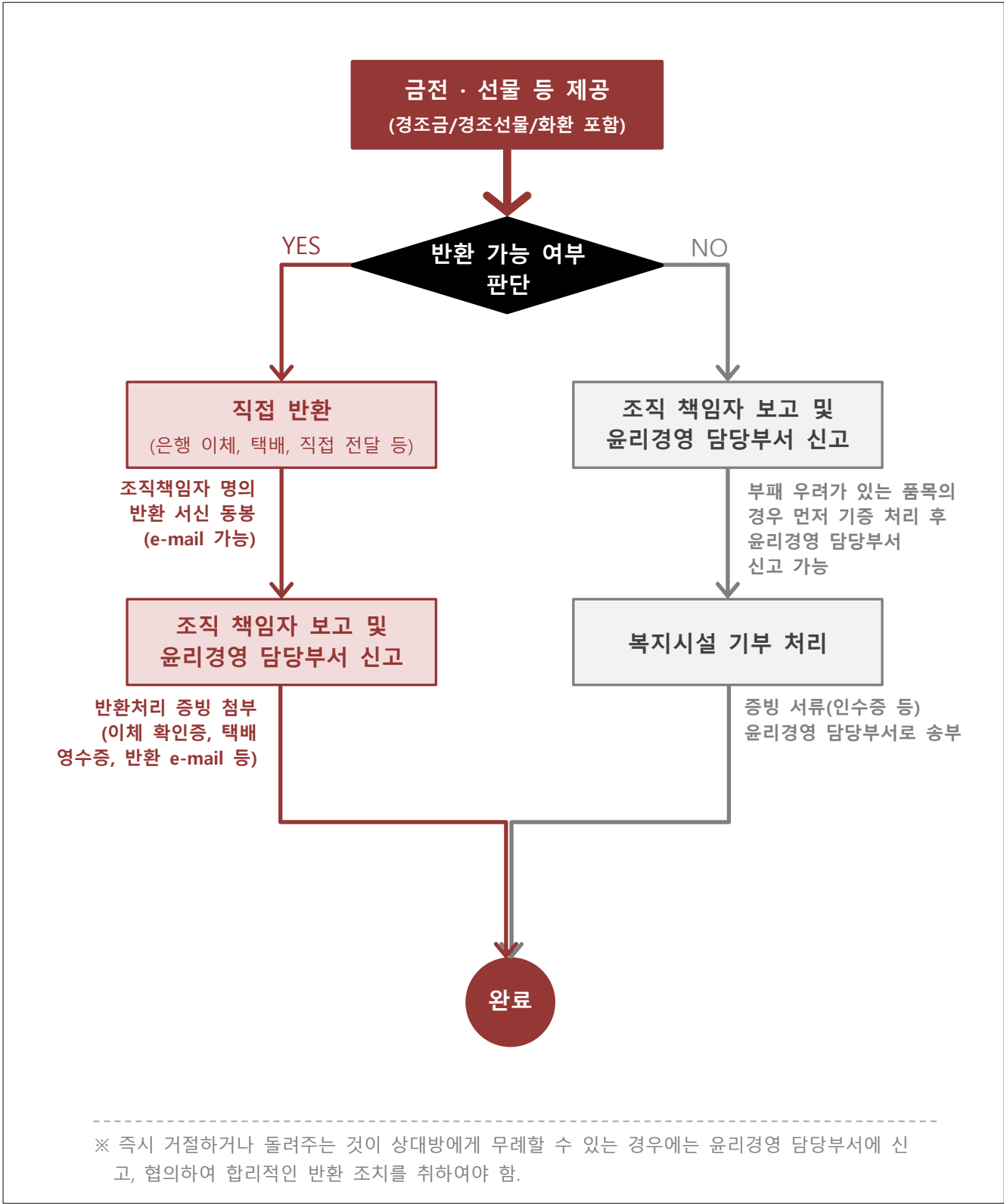
사업자등록번호 :

에스케이실트론 주식회사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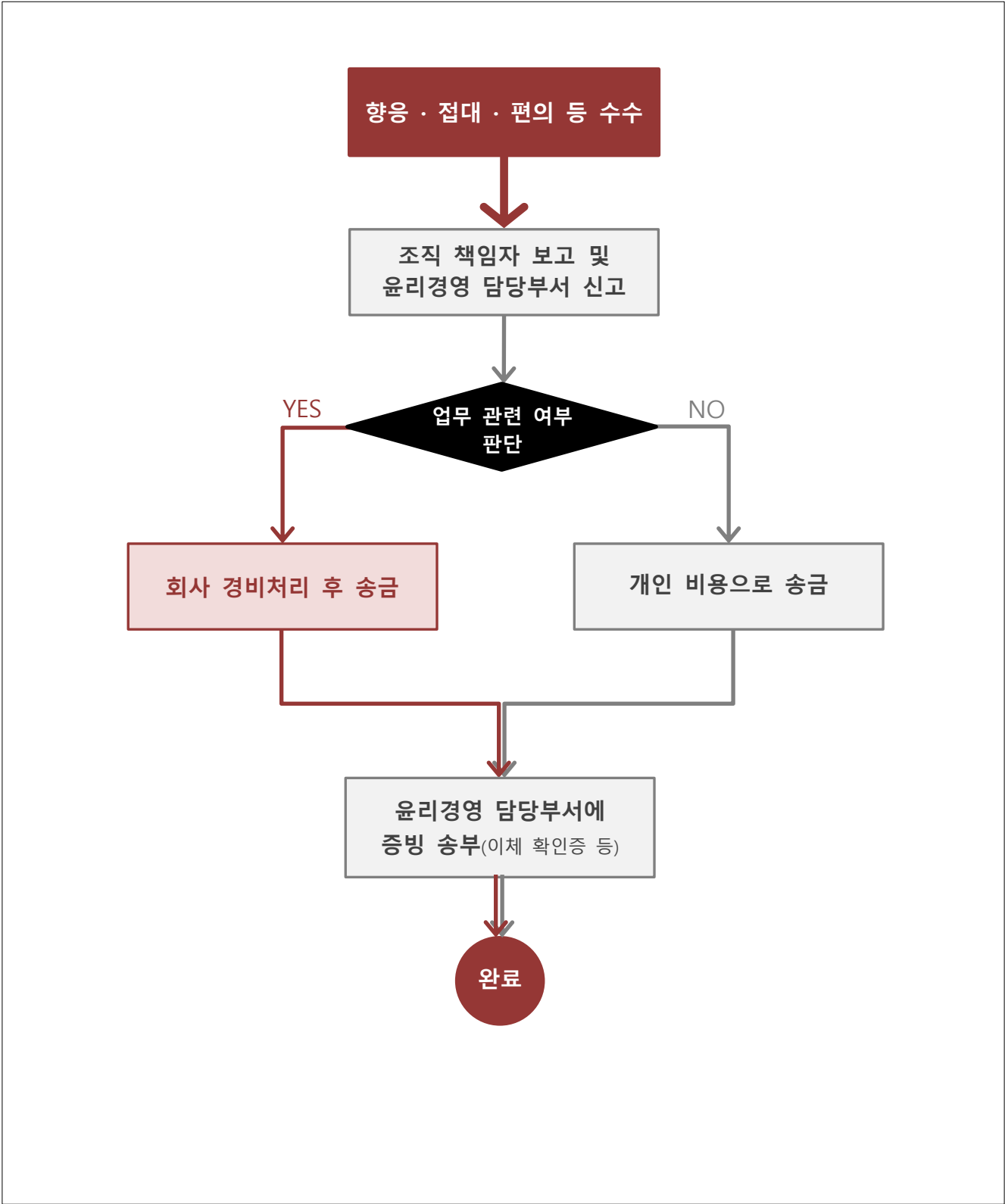
대 표 이 사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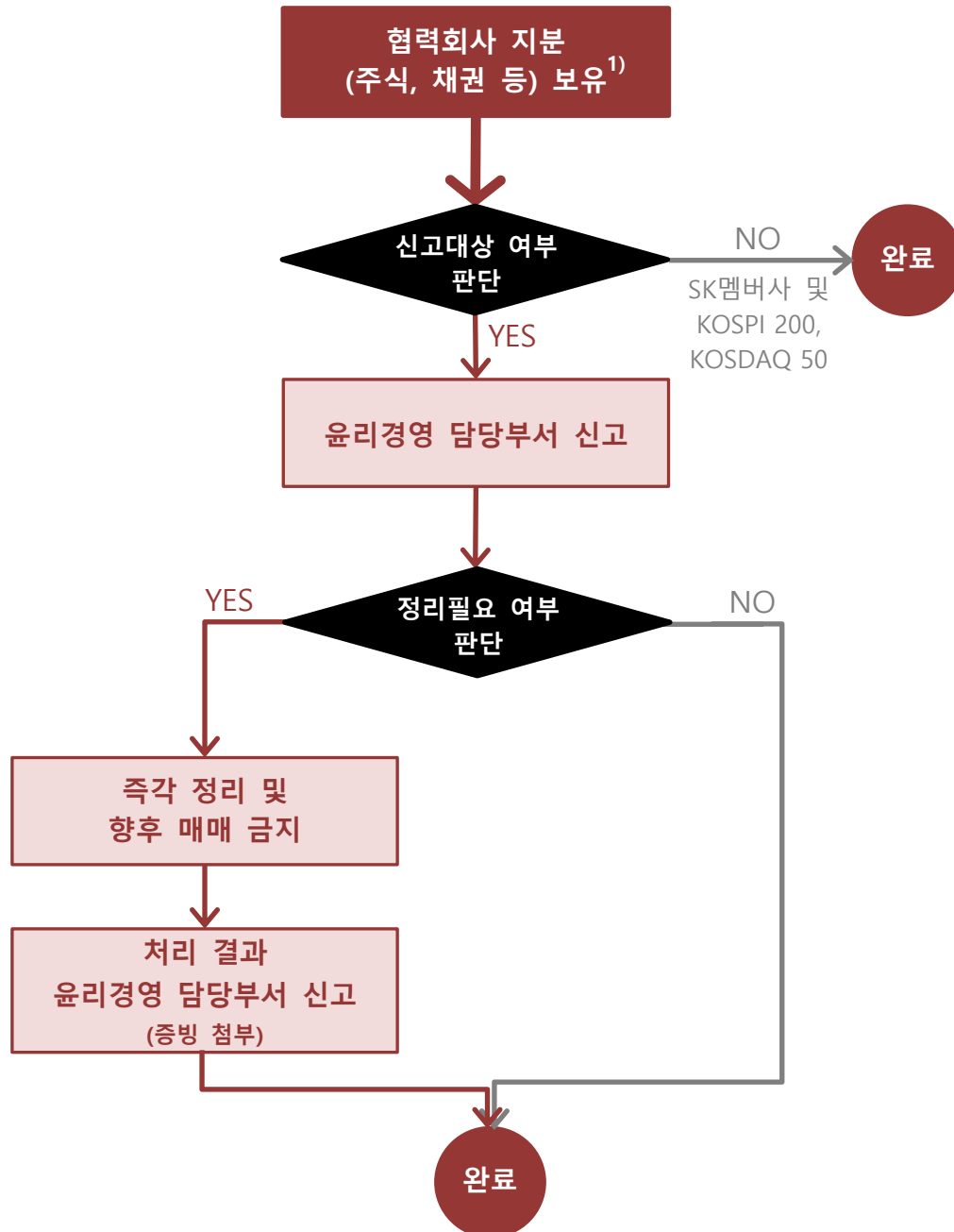
금전 · 선물 등 수수 신고 절차



향응 · 접대 · 편의 등 수수 신고 절차



협력회사 지분 참여 신고절차



¹⁾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명의 및 차명 보유 포함